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7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Q 이번에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정규 학사과정에 합격하여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해서 대학에 다니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비자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학(D-2)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5호).

비자 발급 절차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재외공관 방문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참조)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비자 심사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비자 발급	•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참조)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전단)
-------	---

외국인유학생

Q

한국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에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 사항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10.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및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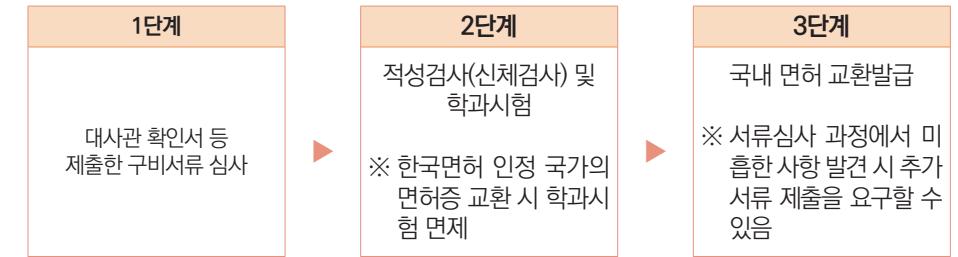
외국인유학생

Q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학생입니다. 입국 전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Q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급하다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길 원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6. 23., 39쪽 참조).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 내용 및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 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외국인유학생



유학(D-2)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최근 한국의 한 무역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유학 비자가 남아있으니 그대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심사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키워드 외국인유학생, 한국 유학, 비자 발급, D-2, D-4, 체류기간, 입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유학생 국내 생활, 운전, 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국내 취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